

충청북도농산물원종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이유

- 연구기관이 아닌 단순한 종자생산보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산물원종장장의 정원이 단일 직렬(지방농업연구원)로 되어있어 효율적인 인사관리 지난
- 타도에는 '87년도(경기도는 '89년도)에 장장의 정원을 지방농업기정 또는 지방농업연구원으로 복수직화하였고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상의 정원에도 복수직으로 되어있어 도간 형평 유지 및 정원규칙과의 일치 도모

주요골자

- 농산물 원종장장의 정원을 "지방농업연구원(4급)"에서 "지방농업기정 또는 지방농업연구원(4급)"으로 조정(조례 제4조)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 제2조 제4항

예산상황 : 해당없음.

기타 참고자료 : 별첨

충청북도농산물원종장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농산물원종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 (장장) 제1항중 "지방농업연구관(4급)"을 "지방농업기정 또는 지방농업연구관(4급)"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 문 대비 표

현 형	개 정
<p>제4조 (장장) ① 농산물원종장에 장장을 두 며 지방농업연구원(4급)으로 보한다.</p>	<p>제4조 (장장) ①..... ...을 두며 지방농업기정 또는 지방농업연 구관(4급)으로 보한다.</p>

〈참고자료〉

地方自治法令 (部分抜萃)

地方自治法

제 105 조 (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地方自治法施行令

제 40 조 (사업소, 출장소의 설치) ①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로 한다. 다만, 일정기간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소는 한시적으로 설치한다.

1.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등으로 보아 별도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함이 효율적일 것.
2. 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이 하 생략

忠北道地方公務員定員規則(部分抜萃)

제 2 조 (공무원의 정원) ① 내지 ③ …… 생략 …… ④ 충청북도 사업소에 푸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사업소

기관부서	직급	합 계					별 정 직	연 구 직				
		계	별 정 직	연 구 직	2급 내지 9급	기 능 직		연 구 관		연 구 사		
								소 계	농 업 연구관	소 계	농 업 연구사	
농산물원종장		23	-	5	2	16	-	5	1	1	4	4
일 반 직						기 능 직						
계	3 급	4 급		5 급	6 급		계	9 등급		10 등급		
	-	소 계	농 업, 농업연구직	-	소 계	행정 주사		소 계	순 전	소 계	기 계	사무 보조
2	-	1	1	-	1	1	16	2	2	14	3	11

※ 농산물 원종장 해당직렬만 발췌 작성

도별 농산물 원종장장 조례상 직역 현황

구분 도별	장 장 의 직 역 현 황 (조 례 상)	조 치 일 자	비 고
경 기	지방 농업기정 또는 지방 농업연구원	'89. 6. 24 (조례 제1924호)	
강 원	◇	'87. 3. 4 (조례 제1803호)	
충 북	지방 농업연구원	-	
충 남	지방 농업기정 또는 지방 농업연구원	'87. 4. 7 (조례 제1732호)	
전 북	◇	'87. 5. 28 (조례 제1654호)	
전 남	◇	'87. 4. 27 (조례 제1682호)	
경 북	◇	'87. 2. 19 (조례 제1629호)	
경 남	◇	'87. 5. 1 (조례 제 971호)	
제 주	-	-	